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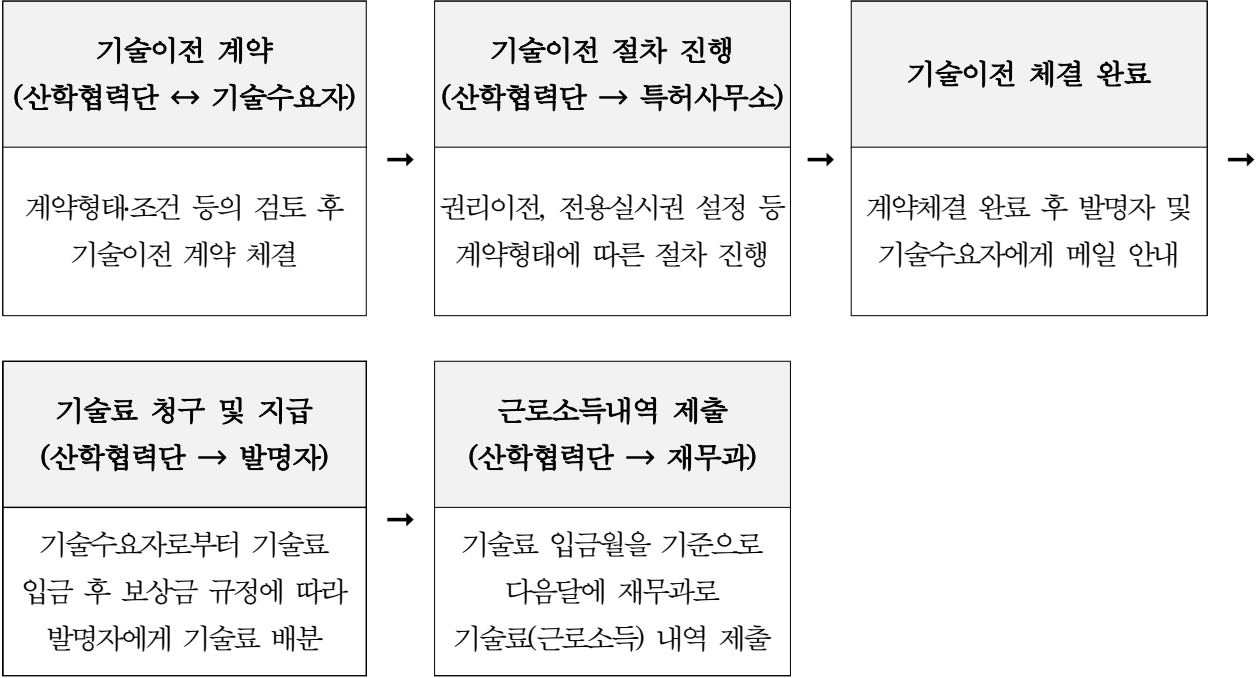
<h1 style="margin: 0;">24</h1>	<h2 style="margin: 0;">기술이전</h2>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관 : 산학협력단 <input type="checkbox"/> 주무 : 특허기술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한국교통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(Know-How 포함)을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술료 수입 증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
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 -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(이하 ‘지식재산권 규정’ 이라 함)
 -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시행지침(이하 ‘시행지침’ 이라 함)
- 관련부서 : 전 부서

2. 업무흐름도

■ 기술이전 업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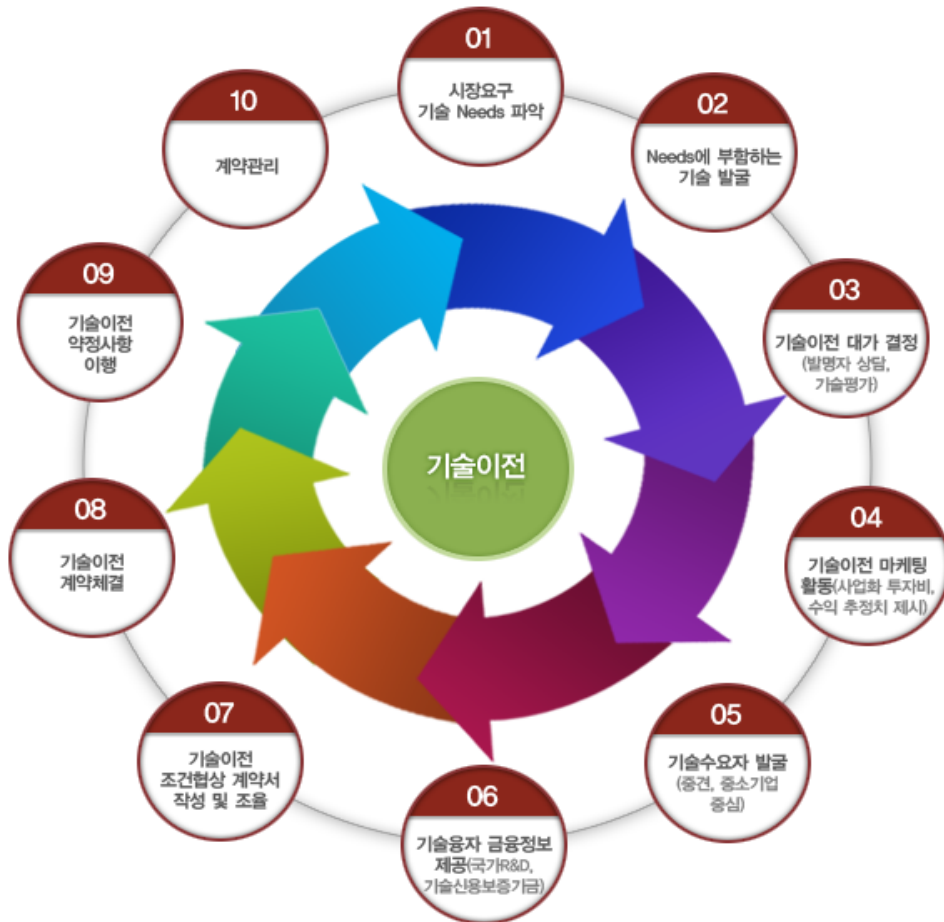
3. 주요내용

■ 기술이전 정의 및 분류

- 기술이전 정의
 -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
- 기술이전 대상 및 형태
 - 대상 :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, 저작물, 프로그램, 노하우 등
 - 형태 : 기술매매(양도), 라이선스 허여, 기술전수

구 분	내 용
기술매매(양도)	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, 저작물, 프로그램 등
라이선스 허여	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기술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일정기간 허락하는 형태(전용실시권, 통상실시권 등으로 구분)
기술전수	노하우 등 활용가능한 기술의 전수 및 이전

- 기술이전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



- 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
 - 산학협력단은 기술을 이전할 경우 발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업체를 결정
 -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표준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·검토 후 계약 체결
 - 기술료의 10% 이상을 착수금으로 산학협력단에 납부
- 기술이전 실시료 분배(지식재산권 규정 제23조)
 - 기술이전 계약 완료 후 입금된 기술료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 발명자 배분
 - 실시료 배분기준

2천만원 이하							2천만원 초과분	
발명자 주도		산학협력단 주도		중개기관 주도			발명자	산단
발명자	산단	발명자	산단	발명자	산단	중개기관		
90%	10%	70%	30%	70%	20%	10%	65%	35%

- 특허권이 없는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은 발명자 90%, 산학협력단 10%로 배분
- 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
- 한국교통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(이하 “기술지주회사” 라 함)의 중개에 따라 기술이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 보상금 50%를 지급하고, 나머지 50% 중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의 80%는 기술지주회사의 중개보수금으로 지급

※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한국교통대학교 기술지주(주)가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음.

- 기술료 기여자 보상금 지급(지식재산권 규정 제23조)
 - ※ 발명자 이 외의 자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과정에 기여한 경우 수익금의 5% ~ 10%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가 수령할 보상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■ 기술이전 기술료 근로소득세 적용

- 기술료 : 기타소득세 → 근로소득세 적용
 - 2017. 1. 1.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타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로 변경

■ 교원 업적평가 반영

- 특허권이전료 및 로열티(기술이전 포함, 입금일 기준)등의 실적에 대하여 백만원당 40점을 인정하고 총액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백만원당 20점을 가산(출원인이 “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” 인 경우만 인정)

[참고 1]

〈관련 규정〉

(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)

제17조(계약의뢰) 발명자는 실시자와의 사전협의 결과 해당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, 사전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체결의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8조(사전심의) 산학협력단은 제17조의 기술이전계약체결의뢰서와 기술이전계약 관련자료(의견포함)를 지식재산권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의 토록해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추인할 수 있다.

제20조(실시기간) 실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등을 감안하여 산학협력단과 실시자의 합의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1조(기술이전 계약체결)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감안하여 실시자와 기술료 납부조건을 설정한 후 표준기술이전계약서에 의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. 다만, 대상업체와 협의과정에서 기술이전 조건 등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표준기술이전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이전기술의 특수성과 발명자의 특수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.

③ 이전기술의 실시권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2조(계약의 해지)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
2.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

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
3.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4. 기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

② 실시자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,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의견서와 함께 계약해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,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해 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23조(실시료 분배) ① 연구 활동의 성과로써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, 전용실시권의 설정,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발명자에게 분배한다.

1. 수익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구분	1. 발명자(교수)의 단독 노력		2. 발명자 + 산학협력단 TLO		3. 발명자 + 산학협력단 TLO + 중개기관		
	발명자	산단	발명자	산단	발명자	산단	중개기관
수익 배분 비율	90%	10%	70%	30%	70	20%	10%

2. 수익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제1호와 같이 지급하고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0분의 65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 이외의 자가 기술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가 수령 할 보상금에서 공제 한 후 이를 지급해야 한다.

③ 제2항의 기술이전 기여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 금액 등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.

④ 특허권이 없는 노하우(Know-how) 등의 기술이전은 발명자 90% 산학협력단 10%로 배분한다. <신설 2018. 7. 20.>

⑤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한국교통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(이하 “기술지주회사”라 한다.)의 중개에 따라 발명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양도, 전용실시권의 설정, 통상실시권 허여 등의 기술이전이 발생하였을 경우

에는 발명자 보상금 50%를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배한다. <신설 2018. 7. 20.>

1. 산학협력단의 수익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하며 이 중 80%는 기술지주회사에 중개보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2. 중개보수금은 별도의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며 위임 시에는 중개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.
3. 중개보수금 지급시기는 산학협력단에 수익금이 입금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다.

제25조(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규정이 있는 기술이전의 실시료 분배) ① 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실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분과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을 제23조와 같은 비율로 발명자에게 분배한다.

제30조(지급기간) ① 실시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.

- ② 발명자가 재직중 또는 퇴직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.
-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 한다.